서울문화재단 . 광주문화재단

교 류 협 력 협 약 서

(재)서울문화재단과 (재)광주문화재단은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 상호 교류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예술 진흥과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양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
2. 문화예술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문화적 역량제고
3. 양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
4. 양 기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
5. 문화예술분야의 상호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의 공동 추진
6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

제3조 (상호협의) 양 기관은 본 협정의 개정이나 해석상의 이의 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신의성실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19일

서울문화재단

대표이사 조 선 희

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

대표이사 서 영 진